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제2972호
----------	--------

제출년월일 2022. 03. .
제출자 김포시장

1. 심사경과

- 본 안건은 2022년 3월 0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설치·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우리 시도 인구 증가에 따른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증가하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의 목적 (안 제1조)
- 김포시 시민옴부즈만의 기능, 구성 (안 제3조, 제4조, 제6조~제14조)
-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5조)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 (안 제15조~제32조)
-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3조, 제34조)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 완화와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보다 다양하고 고질적인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전문 기구나 조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적극행정 확산 시류에 부응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로 고충민원 처리를 통한 시민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검토됨.